

자연환경보전법해설

동덕수^{1*}

¹환경부 자연자원과

I. 환경법 개관

1. 환경법 연혁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환경법의 변천은 크게 4단계로 구분

1) 제1단계(1950년대-1970년대) : 환경정책 태동기

- 공해방지법('63) : 전문 21조, 최초의 환경법령
 - 위생법 성격, 전담기관 결여 및 예산조치 결여로 역할 미미
- 환경보전법('77) : 11장 70개 조문
 - 환경기준 설정, 환경감시제도 도입,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 마련

2) 제2단계(1980년대) : 환경정책 형성기

- 헌법 : 환경권 조항 명시
- 환경오염방지사업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제정

3) 제3단계(1990년대) : 환경정책 발전기

- 환경보전법 발전적 해체 : 환경정책기본법('91), 자연환경보전법('91),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
 - 환경영향평가법('93),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습지보전법 등 자연생태계보호 관련 법률 증가

4) 제4단계(2000년대) : 환경정책 성숙기

- 오염총량관리제도, 물이용부담금관리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도입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정책 기틀마련

- 4대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관한법률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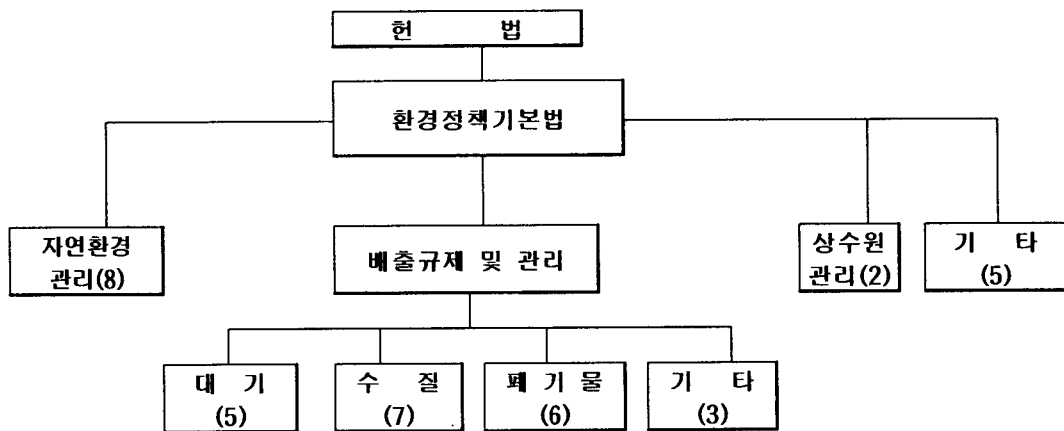
< 환경정책 및 환경법의 발달과정 >

시대구분	환경행정	환경법	비고
환경정책 태동기 (50년대-70년대)	· 환경행정은 보건 관련조직으로 출발	· 공해방지법('63) · 환경보전법제정 ('77)	· 국지적 환경문제 : 울산, 온산 오염피해
환경정책 형성기 (80년대)	· 환경청발족('80) · 4대강 유역환경조사 · 지방환경청설치 ('86)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 환경오염방지사업법제정('83) · 폐기물관리법제정 ('86)	· 환경권인정(헌법제35조)
환경정책 발전기 (90년대)	· 환경처 승격 ('90) ·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역량강화 · 환경부 승격 ('95)	· 환경정책기본법제정 ('91) · 환경보전법을 6개법으로 분법, 복수법체제로 전환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91)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93)	· 지구환경문제 대두 · 낙동강 폐놀오염사고 발생 · 리우 지구정상회담 개최 ('92)
환경정책 성숙기 (2000년대)	· 대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사용자부담원칙 ·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시행	· 낙동강 등 3대강특별법 제정 ('0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03) ·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04)	· 유역별 관리필요성 대두 · 수도권대기오염심화 ·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증가

2. 환경법 입법체계

- 환경부소관 환경법은 37개, 산림법 등 타 부처 법률 포함시 60여개 이상
- 환경부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 1)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정.
 -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정
 -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4)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규정
 - 5)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의 개선 등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규정
 - 6) 습지보전법 :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등 규정
 - 7)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과 서식환경 보호·관리, 생물 다양성 증진, 생물자원 보전등에 관한 사항 규정(2004. 2. 9 제정·공포)
 - 8)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백두대간보호계획, 보호지역 지정 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03. 12. 31 공포), 환경부·농림부 공동소관

環境部所管 環境法の 體系圖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환경 보전법 ○ 자연 공 원 법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토양 환경 보전법 ○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습지 보 전 법 ○ 야생 동·식물 보호 법 (조 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환경 보 전 법 ○ 소음진동규 제법 ○ 다 중 이 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 악취 방 지 법 ○ 수도권 대기 환경 개 선 에 관 한 특 별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환경 보 전 법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 질 개 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 계 물 관 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 계 물 관 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 계 물 관 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관 리 법 ○ 자원의 절약 과 재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처 리 시설 설치 촉 진 및 주변 지역 자원 등 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 가 간 이동 및 그 처 리 에 관 한 법률 ○ 수도권 매립 지 관리 공 사 의 설립 및 운 영 등 에 관 한 법률 ○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범 죄 의 단 속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 환경 개 선 비 용 부 담 법 ○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 먹는물 관 리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기술 개 발 및 지원 에 관 한 법률 ○ 환경 분쟁 조 정 법 ○ 환경 개 선 특 별 회 계 법 ○ 환경 관리 공 단 법 ○ 한국 자원 재 생 공 사 법 |
|---|---|---|--|---|--|--|

II. 자연환경보전법 개관

1. 연 력

- 1991년 12월 제정(1992. 9월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은 1997년과 2001년도에 2차에 걸쳐 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기본정신 구체화, 종래 산림법 등에서 규율하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환경법 관점에서의 재편 및 새로운 자연관리 수단 도입

2. 현행 입법체계 및 주요내용 : 7장 68개 조문, 부칙 11개 조문

1)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2) 제2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책무, 서식지의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금지, 국제거래 규제, 광고제한

3)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기준, 관리계획, 행위제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

4) 제4장 생물양성의 보전

- 자연환경조사, 생태계변화관찰, 자연환경조사원, 생태자연도의 작성,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 연구·기술개발

5)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자연경관 보전, 생태관관의 육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6) 제6장 보 칙

- 생태계보전협력금, 토지등의 수용사용, 국고보조, 한국자연보전협회

7) 제7장 벌칙

Ⅲ.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1. 법 개정 추진배경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정비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 조수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합한 야생 동식물보호법제정('04.2.9일 공포)
 - 자연환경보전법의 멸종위기종등 야생동식물관련규정 삭제(12조문)

□ 국토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정책 추진 체계 미비

- 기존의 입법내용은 생태계보전에 치중되어 있어 자연환경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연환경정책 추진이 곤란
 - 생태계 보전중심의 정책기조에서 국토전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 및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현행의 자연환경계획체계로는 환경계획으로서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미흡
 - 전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연환경계획 수립·시행 필요

□ 근원적인 자연경관보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필요

- 그동안 자연경관을 경시한 무분별한 개발로 스카이라인 파괴 등 국토전역의 자연경관훼손문제가 심각
-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발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정책제시 및 법 근거 마련 필요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기반 확립

- 종래 생태보전중심의 지역관리 정책 기조를 자연환경의 특성 및 보전가치 등을 토대로 보전과 이용지역으로 구분·관리하는 정책기조로 전환
- 최근 국토생태네트워크, 생태복원, 생태공원, 생물자원보전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자연환경정책이념의 법 규범화 및 실현방안 마련 필요

2. 그간의 추진사항

- 자연환경보전법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법제연구원 '02. 2~'02. 6)
- 자연경관보전 입법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02. 12. '03. 2)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03. 3, '03. 7)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성안 및 관계부처 협의('03. 8)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04.4.13)

3. 개정안의 주요내용

3-1. 입법구조

- 제8장, 96개 조문(12개 조문 삭제, 40개 조문 신설)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국가등의 책무,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등
 - 제2장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수립·내용·시행 등
 -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등 : 생태계보전지역, 생태마을, 생태탐방지활용, 지정절차, 관리계획, 행위제한, 행위제한 완화, 출입제한, 중지명령, 임시생태계보전지역, 토지매수, 주민지원,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
 - 제4장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등 :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경관보호구역, 자연경관마을, 기초조사 및 지정절차, 관리계획 수립, 행위제한, 행위제한완화, 중지명령, 주민지원, 자연경관영향검토 및 심의 등
 - 제5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 자연환경조사, 생태계변화관찰, 생태자연도 작성,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생물다양성연구기술개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 제6장 자연자산의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설치 조성, 생태관광의 육성, 자연생태공원 지정관리,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훼손지 생태계 복원, 생태통로, 생태계보전협력금
 - 제7장 보 칙 : 손실보상, 국고보조, 자연환경안내원, 자연환경학습원 등
 - 제8장 벌 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3-2. 주요 내용

[1] 정의 신설

- 자연환경 신설(제2조 제1호): “자연환경”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을 말함
 -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2호)“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생태축 신설(제2조 제6호) : “생태축”이라 함은 자연생태 및 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들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생태·녹지의 골격구조 및 연결망을 말함.
- 자연경관 신설(제2조 제9호):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과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시각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연경치와 이를 형성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그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을 말함.
- 자연생태공원 신설(제2조 15호) : “자연생태공원”이라 함은 국민들의 건전한 자연환경이용 및 정서생활의 함양 등을 위해 자연생태가 우수하면서도 자연관찰 또는 생태탐방 등에 적합한 곳을 환경부장관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자연생태형 공원을 말함
- 생태마을 신설(제2조 16호):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함

[2]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보강(제4조)

- 자연경관 보전 및 이용접근 보장, 자연환경의 생태적 순환 촉진, 생태훼손지 보정, 개발계획의 자연환경조화 및 보전방안 강구 등 신설

[3]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체계 개선(제12조~제15조)

- 현 행 : 계획기간 5년, 계획내용 형식적, 자연경관보전계획 미흡, 시·도 및 시·군·구 자연환경계획 결여
- 개정안 : 계획기간 10년, 계획내용 보완, 자연경관계획 포함 의무, 시·도 및 시·군·구 자연환경계획 수립 (환경보전계획에 포함)

법 조문안

제12조(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

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마다 변경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각 시·도에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전국의 생태축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3항 제6의 자연경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의 현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보전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보전 구상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지정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 친화적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연경관 보전사업의 소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기본계획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 및 전문기관의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 및 시·군·구 자연환경보전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의 3 및 제14의 4의 규정에 의한 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지역의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관할 구역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제16조~제37조)

현 행 : 생태계보전지역 구분 결여, 완충구역 실효성 결여(행위제한 無), 지정절차 미흡, 행위제한 합리성 미흡(행위제한 일변도)

개정안

- 보전지역 구분(핵심·완충·전이구역) 및 행위제한 차등화, 생태마을 도입, 지정절차 도입(생태조사, 주민 및 지자체장 의견 수렴 등), 주민지원 강화
- 완충·전이구역, 생태마을 : 생태탐방, 생태학습, 생태연구 시설설치 허용, 주민소득증 대방안 강구, 공공시설 우선 설치 등 인센티브 부여

법 조문안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제16조 (생태계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종 및 그 서식지가 생태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아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② 환경부장관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핵심생태보전구역**(이하“핵심구역”이라 한다) :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곳
 2. **완충생태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연결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친자연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
 3. **전이생태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구조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허용되는 곳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구조 및 지형여건상 제2항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구분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제1호만 지정하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만 지정할 수 있다
- ④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및 구역 구분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생태마을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지역 안에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을 때에는 생태마을로 지정(전이구역에 한한다)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이외의 지역에 자연생태를 잘 보유·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생태와 잘 어울리는 마을이 있을 때에도 생태마을로 지정(단, 임업및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마을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 중 특히 자연생태를 잘 보유·유

지하고 있거나 생태적 모범이 되는 마을이 있을 때에는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 또는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한 때에는 공공용의 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 및 생태우수마을 중 생태계보전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생태마을 및 생태우수마을이 자연생태 등이 파괴·훼손되는 등 생태마을 또는 생태우수마을로서 지정관리 하기가 곤란 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 및 생태우수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생태탐방지 활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중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과 일정주변지역을 국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성함양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태탐방·생태휴양·생태공원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계 현황 및 특성, 지형, 지목 등 그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등과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사유 및 목적
2. 주요 생태계 현황 및 생태자연도

3. 용도지역 및 주요 토지이용현황
4. 개략적인 지정면적 및 범위
5. 개략적인 용도 구분(핵심·완충·전이구역) 및 관리방안
6. 생태마을 지정안(마을이 있을 경우에 한함)
7. 1:25,000 지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및 협의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변경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감시 및 보전·관리
2. 생태계보전구역별 관리 방안
3. 생태계보전지역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4.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및 2급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덧·울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3.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행위
4. 공유수면의 매립 및 하천·호소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6.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 제1호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연환경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당해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4.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로서 경내에서 건축물을 증·개축 하는 경우
 5.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를 처분하는 경우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수해 및 재해의 예방·방지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핵심생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① 핵심생태구역안에서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연면적의 1.5배 이하 증축·개축하는 경우
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및 산림생태계·산림유전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이나 토지의 형상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환경부장관이 핵심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완충생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① 완충생태구역안에서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개축하는 경우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건축물 기타 공작물 및 시설물의 건축(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전에 대지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민들의 건전한 생태탐방·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탐방·생태학습 시설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공익목적에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과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및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전·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산림사업
 6.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7.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8. 환경부장관이 완충구역의 생태계보호·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의 종류, 높이, 건폐율·용적율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이생태구역 및 생태마을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① 전이생태구역 및 생태마을(생태계보전지역안에 지정된 생태마을에 한한다)안에서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행위
 2. 전이생태구역 및 생태마을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부대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3. 제23조 제1항 제3호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탐방·생태휴식·생태학습 생태연구 시설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생태탐방객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 시설(부대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5.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거주 주민 및 탐방객들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이생태구역 및 생태마을의 생태계보호·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 및 높이, 건폐율·용적을 및 생태탐방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 (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당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수해·재해방지, 영농행위 등 공익목적 및 주민의 생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안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기준, 구역구분, 생태마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자연경관 보전 관리 강화(제38조 ~ 제49조)

□ 현 행 : 자연경관보전 규정이 권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미흡

□ 개정안

○ 자연경관보호구역 도입 : 특별보호·경관관리구역 구분(행위제한 차등화)

○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제 도입

▶ 지자체의 자연경관 심의제

- 심의 대상 : 자연경관 보전 필요지역(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및 일정거리(약 500m) 내 개발사업과 자연경관영향이 큰 개발사업

- 심의 방법 : 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 환경부의 자연경관 심의제 도입

- 심의 대상 : 환경성검토 및 영향평가대상 중 자연경관 영향이 큰 개발사업(보전용도지역 일정 거리 이내 개발사업 포함)

- 심의 방법 : 환경부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방관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신설)에서 심의

□ 법 조문안

제4장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등

제38(자연경관의 보전)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자연경관보호구역)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환경부장

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준하는 고산초원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특이하고 수려하여 보전가치가 매우 큰 곳
 2. 하천·호소·강하구·해안(해양을 제외한다) 등이 자연 상태의 원시성과 수려하고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특별한 보전·보호가 필요한
 4. 기암석·폭포·갈대림 등이 희귀하고도 특이한 지형 및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특별한 보전·보호가 필요한 곳
 5. 주요한 생태축 및 능선 등이 수려하고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특별한 보전·보호가 필요한 곳
 6. 기타 자연경관보전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
- ② 환경부장관 등은 자연경관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의 유형 및 특성, 자연경관요소, 보전가치 정도 등을 토대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연경관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 :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매우 수려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곳
 2. 자연경관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 : 특별보호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연결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접근 등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
- ③ 환경부장관 등은 자연경관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자연경관마을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구역 안에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취락생활 및 생활근거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경관마을로 지정(관리구역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마을에 대하여는 마을하수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설치 지원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마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자연경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환경부장관 등은 자연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경관 현황 및 지형적 특성 등 그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등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측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42조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지정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사유 및 목적
2. 자연경관요소 등 자연경관 현황
3. 대상구역의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4. 개략적 지정면적 및 범위
5. 대상구역의 개략적인 용도 구분 (특별보호구역 및 관리구역)
6. 자연경관마을 지정안(기존 마을이 있을 경우에 한함)
7. 1:25,000 지형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자연경관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시장·군수(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당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자연경관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등은 자연경관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연경관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2. 특별보호구역의 보호 방안
3. 관리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자연경관마을의 공공용 시설 설치 지원 및 주민 소득증대 방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 (자연경관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자연경관보호구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행위
2. 공유수면의 매립 및 간척
3.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4. 기타 자연경관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자연경관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연환경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경관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4.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로서 경내에서 건축물을 증·개축 하는 경우
5.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를 처분하는 경우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수해 및 재해의 예방·방지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자연경관보호구역을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③ 누구든지 자연경관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특별보호구역에 한한다)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해 설치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기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5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①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제4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연면적의 1.5배 이하 증축·개축하는 경우(3층 이하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공중화장실, 정자, 등대, 기상관측시설
3.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과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및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전·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특별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6조(자연경관관리구역 및 자연경관마을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① 자연경관관리구역 및 자연경관마을에서는 제4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
2. 자연경관관리구역 및 자연경관마을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부대건축물 및 부설주창을 포함한다)

3. 국민들의 건전한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탐방·자연학습 및 자연휴식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생태탐방객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부대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건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임·수산업을 영위하거나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건축
6. 그밖에 자연경관관리구역 및 자연경관마을의 자연경관 보호·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건축물의 종류, 층고, 색채 및 생태탐방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연경관보호구역의 주민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경관보호구역에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구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보호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심의 등)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보전을 위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호의 일정거리이내 지역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인·허가 할 때에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자연경관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2.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3.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경관보호구역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심의(이하 “자연경관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연경관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지형·지질, 동·식물상 등 다른 자연환경분야에 대하여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개발사업 등을 인·허가할 때에는 자연경관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전 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 자연경관을 이미 심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심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 등의 종류·규모 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연경관심의에 필요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6] 자연생태공원제도 도입(제65조~ 제70조)

도입 배경

- ① **현행 공원법제(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는 생태공원 지정관리 곤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은 면적이 광대하여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생태공원과는 맞지 않음
 - ※ 국립공원 평균 323km²(20개, 6,473km²), 도립공원 평균 33.7km²(22개, 742km²), 군립공원 평균 13.8km² (31개, 429km²) ·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묘지·체육·도시자연공원)은 주민들의 이용·접근 등 편리성 위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생태보전을 우선시 하는 공원의 지정·관리가 곤란
- ② **지자체의 무분별한 생태공원 지정·관리로 생태계 훼손우려**
- '90년대부터 생태공원 지정을 남발하고 있어 생태계 훼손이 우려
 - 생태공원 명분 하에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수단 활용 가능성이 커 자연환경 훼손 우려증대
 - 생태공원의 입지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 시설설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약
 - ※ 대호간척지 생태공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문경세재 생태공원, 함평용천사 생태공원, 길동 생태공원, 한강조류 생태공원(조성 중), 시흥 폐염전 생태공원(계획) 등
- ③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생태 휴양형 생태공원제도 도입 필요**
- 국민들이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휴양과 정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한 생태공원제도 도입 필요
- ⇒ **생태공원의 법적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들의 정서생활 향상기여 및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생태공원제도 도입 추진**

□ **개정안**

- **지정대상**
 -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이용·접근하기가 쉬운 지역
 -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공원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국민들의 생태탐방, 교육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 **용도구분(보전용지, 관리용지) 및 규모**
 - **보전용지(최하 90%이상)** : 보전·보호 대상 지역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곳,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축 형성 지역, 야생동식물 서식지, 자연경관 수려 지역
 - 그 밖에 공원의 생태계 보전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곳

- **공원관리용지(최대 10%이하)** : 이용개발 대상 지역
 - 보전가치 없거나 비교적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기존 취락마을 포함)
 - 자연탐방, 학습, 휴식, 이용객 편의시설 등 설치
- **규모** : 3만㎡(약 1만평) 이상 ~150만㎡(약 45만평) 이내
- **행위제한(가능 행위)**
 - **보전용지** : 생태조사 및 학술 연구, 국방 군사시설, 통신, 수원보호, 기상관측, 산불방지 시설, 산림법에 의한 영림사업등
 - **관리용지** : 자연탐방·생태학습, 탐방안내, 전망대, 생태 보전관, 전시관, 생태연구, 주민·이용객 편의시설(안내소, 주차장, 음식시설 등)
- **공원의 지정·조성·관리 등**
 - **공원 지정**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 **공원 조성** :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시행
 - **공원 관리** : 지정권자가 관리(위탁 가능)
 -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 공원시설관리(정비·확충)에 사용

□ **법 조문안**

제65조(자연생태공원)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환경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 아닌 지역 중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자연환경이용, 생태교육,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가 우수하면서도 공원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등은 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자연생태 및 지형적 특성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1. 보전용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보전·보호가 필요한 곳

- 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곳
- 나.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법정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
- 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
- 바. 그밖에 건전한 생태공원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곳

2. 관리용지 : 생태탐방, 이용자들의 휴양 및 편의제공, 공원유지 등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곳

③ 생태공원은 최소한의 생태적 기능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최하 3만㎡ 이상, 최대 150만㎡이하 면적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0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공원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공원을 지정·변경한 때에는 각각 환경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정·변경내용을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공원 및 보전용지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연생태공원의 조성·관리)①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공원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용지

가. 자연환경조사 및 학술·연구 행위

나. 군사·통신·항로표지·수원(水源)보호·기상관측·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및 이용자들의 생태탐방을 위한 오솔길 등 생태탐방로

마.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과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및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전·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산림사업

바. 생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로서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

사. 공중화장실 등 보전용지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관리용지

가. 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생태탐방·생태학습·생태관찰 시설, 생태탐방 안내시설

다. 자연보전관, 전망대, 전시관, 자연생태연구 관련시설

라. 공원안내소, 주차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마.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주민 편의 시설(이전부터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임·수산업을 영위하거나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시설(이전부터 농·임·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취락마을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마.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공원 이용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등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공원 안에 공원시설을 설치·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 설치에 관한 사항과 생태공원조성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공원 안에서의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다.

제67조 (생태공원의 위탁관리) ① 환경부장관 등은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8조 (생태공원의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① 환경부장관 등은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나.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마.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사.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자.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② 환경부장관 등은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 (자연생태공원의 출입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 등은 생태공원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태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 등은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생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훼손지 생태복원, 생태통로 설치 제도 도입

□ 훼손지 생태복원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의 훼손지 복원복구 대책 수립의무화, 조사연구 및 복원(시범)사업, 자연환경관리 기술개발, 관련산업육성, 생태복원업 등록 제도 도입 등

□ 생태통로 설치 도입

- 주요내용 : 각종 사업허가시 생태통로 설치 등 조치, 생태통로 설치(시범)사업, 환경부 장관의 생태통로 설치 요청 근거 등

□ 법 조문안

제72조 (훼손지의 생태계복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복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훼손 또는 단편화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지의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복원시범사업 또는 복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각종 사업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훼손지의 생태계 복원·복구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등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생태적 균형을 크게 파괴한 때에는 훼손지 복원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복원기술 등 자연환경관리 기술개발, 생태복원 전문기관 육성, 생태복원업 육성 등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생태복원을 업(이하 “생태복원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3조 (생태통로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를 함에 있어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각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허가를 함에 있어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호지역과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1. 보호지역 (Protected Areas)

□ 개 념

-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육상 및 해상지역으로서 법제 및 기타 수단에 의하여 보호관리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69년부터 보호지역의 국제적인 범주화 추진
 - '93년부터 관리목적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구분.
 - 유 형 I - V : 자연특성 및 생물학적, 생태학적 자원의 보전 또는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지역
 - 유 형 VI : 생물학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지역

□ 보호지역의 문제점

- 현지민의 전통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편익 및 보상 제공 미 고려
- 주변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없는 단려진 지역으로 전략
- ⇒ 지역주민 태도 적대적, 경계구간이 동식물의 생태적 요구와 불일치, 인접지역의 공동노력 부족으로 보호지역 기능 수행 미흡

《 보호지역의 범주 및 관리목표 : 자료 IUCN(1994) 》

구 분		명 칭	주요 관리목표
유형 I	A	자연보존지역	과학적 연구
	B	원생지역	원시성의 보호
유형 II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및 휴양
유형 III		천연보호구역	자연특성의 보호
유형 IV		서식지/종 관리지역	관리활동을 통한 서식지/종의 보전
유형 V		경관보호지역	경관의 보전 및 휴양
유형 VI		자원관리보호지역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보호지역의 역할 변화

-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에서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제 4차 세계공원회의 ('92. 베네주엘라 카라스카, 주제 : 삶을 위한 공원)
 - 의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원(Pa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역주민 배제 및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보존주의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
- 보호지역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실증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보호지역 주변 완충지역 설정,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 다목적 자원이용으로 이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 개발 촉구

2.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

□ 개념

- '68년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유네스코회의에서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이 시작
- '71년 MAB 총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개념 정립
 -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적 지식, 기술, 인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육상, 해안 또는 해양생태계를 의미

□ 핵심이념

-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통합·조화시켜 생태계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 동시 달성

□ 지정관리 및 문제점

- '76년부터 지정, '98년 현재 87개국 352개 지역이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의해 지정되어 세계네트워크 형성
- 초기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핵심지역관리에 국한
 - 지역사회발전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저해

□ 역할 변화

- 생물권보전지역의 21세기 비전('95. 생물권보전지역 제2차 국제회의, 세비아)
 - 자연 및 문화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는 근본원리로 전망
 - 보전지역안과 주변부의 주민들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유지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전망

○ 생태계의 보전을 통한 3개의 지역주민 편익제고 방법(Reid, '97)

- 1) 자원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소유권 혹은 이용권)인정
- 2) 자원의 보호를 인해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편익에 대한 지역주민 보상
- 3)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제시)

- 이해관계자간의 공동의 비전 공유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 지역주민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해온 전통적 권리 존중과 지식과 기술 보존

○ 보전과 발전의 지속가능한 조화 실현 사례

- 케냐의 산기슭에 위치한 Amboseli 생물권보전지역, 과테말라 Maya 생물권보전 지역, 프랑스남부의 The Mont Ventoux 생물권보전지역 등

□ 기능과 용도지역

○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은 상호 보완적 기능(3개)수행

- 1)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의 보호 기능(Conservation)
- 2) 사회문화·생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기능(Development)
- 3)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쟁점과 관련되는 연구·모니터링 및 교육·훈련·정보 등의 지원(Logistic Support)

○ 3개의 기능실행을 위해 3개 용도지역으로 구획·관리

〈 용도 구분 〉

구 분	대상지역 및 주요 기능
핵심지역(core area)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곳 - 생태계모니터링, 조사연구 등만 허용 - 법제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는 지역
완충지역(buffer zone)	○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해 있는 곳 - 환경교육, 휴양 및 생태관광, 기초 및 응용연구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전이지역(transition area)	○ 개발가능지역 - 농경지 주거 등 포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부, 비정부기구, 이해관계자 등이 공동 노력하는 지역

※ 최근에는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능이 강조

〈 용도 구분의 장점 〉

- 생태계의 보호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보전지역 지정목적 동의 및 생태계보호에 적극 참여
 -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의 단계적 이용증진으로 적은 면적의 핵심지역으로도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큰 효력 발휘
- ⇒ 인간의 활동을 허용 조장하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

3. 보호지역과 생물권보전지역의 차이점

- 생물권보전지역이 주변지역 거주민과의 공조체계 중시 및 회원국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지정기준은 거의 유사
 - 전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의 90%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과 중복 지정, 약 8%만이 독자적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50%는 UN목록의 국립공원(유형Ⅱ)과 중복지정
- 중복지정의미는 보호지역의 보전정책에 보전지역의 핵심이념을 통합함으로써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